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7.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출석요구서)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6. 07. 01.~ 2026. 07. 15.(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조현주 주무관(Tel. 02-2077-3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

공시송달 명단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위반사항	처분내용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주)녹색친구들 (제2018-286호)	김○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출석요구서)	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 일시: 2026. 7.16.(목) 14시 - 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지역협력과 회의실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팀장 이동희	수취인 불명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의 포기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포기확인서를 청문 실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